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
일부개정조례안(1077)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 창 진
(새누리당, 송파구 제2선거구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.동료 위원 여러분!
남창진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최근 「주거기본법」 제정 및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 개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 등이 이루어져, ‘주택정책심의위원회’가 ‘주거정책심의위원회’로 변경되었는데,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